

2024년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사업

#취업애로청년 고용 활성화 #인건비지원



정규직 채용자 1인당 지원금

6개월 근속 시

- 월 최대 60만원 지급
(1회차 최대 3,600,000원)
- 1년간 연 최대 720만원 지급
- 24개월 근속 시, 480만원 일시지급

사업 절차 안내

- 1단계 기업참여 신청
- 2단계 채용자명단 통보
- 3단계 지원금 신청

(주)제니엘 서초센터	서울특별시 서초구	02-580-0192
(주)제니엘 성남센터	경기도 성남시, 광주시, 양평군, 이천시, 여주시, 하남시	031-604-1751
(주)제니엘 인천센터	인천광역시 중구, 동구, 미추홀구, 연수구, 남동구, 옹진군	032-710-8790
(주)제니엘 부산센터	부산광역시 부산진구, 사하구, 중구, 동구, 연제구, 서구, 영도구, 남구	051-911-0310
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

-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,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하여 청년고용 활성화 도모
-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기업 중, 지원대상 기준에 적합한 인원에 한하여 인건비 지원



지원대상(기업)

- 참여신청 직전 월부터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
* 단, 지식서비스산업/문화콘텐츠산업/신·재생에너지분야/청년창업기업/미래유망기업/지역주력산업/고용위기지역소재기업/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
- 연매출액이 '해당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x 1,800만원' 이상인 기업



지원대상(청년)

-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
-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자
-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(취업애로청년)



지원금 신청 : 정규직채용일(전환일 기준)

- 1회차 지원금 = 6개월 근속 시 신청가능
- 2회차 지원금 = 9개월 근속 시 신청가능
- 3회차 지원금 = 12개월 근속 시 신청가능

*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 필수, 해당 기간 경과 시, 지원 제외

취업애로 유형

①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 ②고졸 이하 학력 ③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 ④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거나,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을 수료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⑤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⑥자립준비청년, 보호연장청년,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⑦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⑧북한이탈청년 ⑨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 취업한 청년 ⑩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 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

근로조건 및 유의사항

- (근로조건)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/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는 자 /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받는자
- (지원금 지급요건)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간 동안 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함
- 청년을 채용한 이후 참여신청을 하는 경우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참여 신청을 해야 함

